

하남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자치행정과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신장2동, 미사1동, 감일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·반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, 지번 및 주택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장2동, 미사1동, 감일동 통·반 신설(별표)
- 나. 미사1동 60통 관할구역 추가 및 공동주택명 현행화

구 분	현 행	개정안	증 감		비 고
			통	반	
신장2동	62통 385반	63통 388반	(증)1통	(증)3반	통 신설 및 현행화
미사1동	71통 331반	72통 333반	(증)1통	(증)2반	
감일동	49통 237반	50통 239반	(증)1통	(증)2반	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신장2동, 미사1동, 감일동의 통·반을 신설하고, 일부 관할구역 및 공동주택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- 통·반의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, 지역 여

건과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입주지역의 행정 편의와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위한 것으로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